

## 제5장

###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

#### 제5.1조

##### 정의

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 부속서 가의 정의는 필요한 변경을 위하여 이 장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.

#### 제5.2조

##### 목적

이 장의 목적은 무역을 원활히 하면서 인간, 동물 및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고, 양 당사국 간의 협력, 의사소통 및 투명성을 제고하며, 양 당사국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가 과학에 기초하고 무역에 부당한 장벽을 조성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다.

#### 제5.3조

##### 적용범위

이 장은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당사국의 모든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적용된다.

#### 제5.4조

##### 일반 규정

1. 양 당사국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.

2. 양 당사국은 상호 관심 정보를 교환하고, 접촉선을 통하여 위생 및 식물위생 사안에 대한 협력을 증진하며 요청에 따라 이에 대한 협의를 증진한다.
3. 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 협정에 따른 제15장(분쟁해결)을 이용하지 않는다.

### 제5.5조

#### 접촉선과 권한 있는 당국

1. 이 협정의 발효 시에,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하고, 이 협정의 발효 후 3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.
2. 이 협정의 발효 시에,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목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을 지정하고 이 협정의 발효 후 30일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.
3. 각 당사국은 접촉선 및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한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모든 변동 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알린다.